

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-107호

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 통지)

「국가기술자격법」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

성명	소재지	위반사실	처분내용
이성*	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3번길 (이하생략)	국가기술자격증 대여 (건설재료시험기능사)	처분불가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성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법 령
이성*	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그린사업㈜('01.9.1.~'02.3.25.)	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[별표18]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('05.1.1.법률제7171호개정전법률) 제12조제2항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('02.6.27.)

3. 의견제출

- 제출기간 : 2023. 6. 21.(수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
(☎02-2110-6728 / FAX 02-2110-0682 / E-mail : sh2079@korea.kr)
-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(의견제출서)

4. 기타사항

-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(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)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02-2110-672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